|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170599          |
|---------------|-------------------|
|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u>2017.05.12</u> |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04.25        |



# 정 보 공 개 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비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길 2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비손 TEL: 031) 736-0055 FAX: 031) 736-0057

http://www.양평해장국.com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 (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 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정보마당'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법령 및 제도'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영업표지         |  | 주 소                 |      |        |        |              |
|-------------|--------------|--|---------------------|------|--------|--------|--------------|
|             |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  |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길 26 |      |        |        | 길 26         |
| 농업회사법인      | 2023.05.15.  |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전화     | 번호     | 팩스번호         |
| 주식회사 비손<br> |              |  | 2023.05.30.         | 이민철  | 031)73 | 6-0055 | 031)736-0057 |
|             |              |  | 1-0059510           | 사업자등 | 록번호    | 69     | 1-81-02967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상호/이름         | 영업표지             | 주 소    |              |               |  |         |  |      |
|------|---------------|------------------|--------|--------------|---------------|--|---------|--|------|
|      | 농업회사법인        | 야면 나이게자          | 경기도 양평 | 군 개군면 하자포?   | 길 26          |  |         |  |      |
| 대표이사 | 주식회사          | 양평서울해장<br>국 큰아들집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      | 비손/이민철        | 그 근어들법           | 이민철    | 031)736-0055 | 031)736-0057  |  |         |  |      |
|      | 농업회사법인        | 농업회사법인           | 농업회사법인 | 농업회사법인       | 농업회사법인 야평 서우치 |  | 경기도 양평균 |  | 길 26 |
| 사내이사 | 주식회사          | 양평서울해장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      | 비손/이광성 국 큰아들집 | 그 근어들십           | 이민철    | 031)736-0055 | 031)736-0057  |  |         |  |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 인수합병여부              | 기업명     | 영업표지            | 인수합병일       | 주소                      | 대표자 |
|---------------------|---------|-----------------|-------------|-------------------------|-----|
| 가맹본부가 다른<br>가맹사업 인수 | ㈜정금에프앤씨 | 양평서울해장국<br>큰아들집 | 2024.10.16. | 경기도 양평군<br>개군면<br>방죽길27 | 신준승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 (앞으로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                                       |
| 상 호      | 양평서울해장국 OO점         |                                       |
|          | 양평서울해장국 <b>큰아들집</b> | 등록번호(일자)<br>4012889590000(2017.09.25) |
| 상표(서비스표) |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 등록번호(일자)<br>4012862920000(2017.09.15)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3년 | 446,091 | 378,610 | 67,480 | 528,276 | 19,278 | 17,480 |
| 2022년 | -       | -       | -      | -       | -      | -      |
| 2021년 | -       | -       | -      | -       | -      | -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영업표지            | 연도    | 가맹사업 - | 관련 매출액 |
|-----------------|-------|--------|--------|
| 정답표시            | 인포    | 매출액    | 비고     |
| OF IT LIGHTLE   | 2023년 | -      | -      |
| 양평서울해장국<br>큰아들집 | 2022년 | -      | -      |
| 12.5            | 2021년 | -      | -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려서비          | OL Z | 성되이  |                  | 사업경력                 |         |
|---------------|------|------|------------------|----------------------|---------|
| 관련여부          | 이름   | 현 직위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br>관련 임원 | 이민철  | 대표이사 | 2023.10.19. ~ 현재 | 농업회사법인<br>주식회사 비손 대표 | 업무총괄    |
| 가맹사업<br>관련 임원 | 이광성  | 사내이사 | 2023.10.19 ~ 현재  | 농업회사법인<br>주식회사 비손 이사 | 가맹사업 운영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 | 수(명) | 직원수(명) |
|---------------|-----|------|--------|
| 시험            | 상근  | 비상근  | 역원구(당) |
| 2023년 12월 31일 | 2   | 0    | 0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등록 및 등록신청<br>여부(일자) | 출원번호 및<br>등록번호        | 소유자<br>(등록신청자) | 존속기간<br>만료일<br>(가맹본부의<br>사용기간) |
|------------------------------|--|---------------------|-----------------------|----------------|--------------------------------|
| <b>夏 양평서울해장쿡 ◎■■</b><br>(상표) | 해당상표를<br>가맹점운영권<br>범위내에서<br>사용할 수<br>있는 권한 | 등록일자<br>2017.09.25  | 등록번호<br>4012889590000 | 황애경            | 2027.09.25                     |
|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br>(상표)         | 해당상표를<br>가맹점운영권<br>범위내에서<br>사용할 수<br>있는 권한 | 등록일자<br>2017.09.15  | 등록번호<br>4012862920000 | 황애경            | 2027.09.15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을 시작한 날: 2017년 8월 15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7년 3월 2일)

### 2.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연혁

| 가맹본부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의 이름 | 가맹사업<br>경영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정금에프앤씨           | 양평서울해장국<br>큰아들집 | 신준승     | 2017.08.15~<br>2018.10.29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br>105번길 25 중앙인더스피아<br>제2공장 710호 |
| ㈜정금에프앤씨           | 양평서울해장국<br>큰아들집 | 신준승     | 2018.10.30.~<br>2024.10.16. |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방죽길 27                                 |
| 농업회사법인<br>주식회사 비손 | 양평서울해장국<br>큰아들집 | 이민철     | 2024.10.16.~현재              |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길 26                                |

# 3.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업종

| 영업표지    | 업   | 종         |
|---------|-----|-----------|
| 양평서울해장국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큰아들집    | 한식  | 해장국       |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 2021.12.31 |      |      | 2022.12.31 | 1    | 2023.12.31 |    |      |      |
|----|------------|------|------|------------|------|------------|----|------|------|
| 시작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7          | 7    | -    | 9          | 9    | -          | 10 | 10   | -    |
| 서울 | 5          | 5    | -    | 6          | 6    | -          | 4  | 4    | -    |
| 부산 | -          | -    | -    | -          | -    | -          | 1  | 1    | -    |
| 대구 | -          |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경기 | 1          | 1    | -    | 2          | 2    | -          | 5  | 5    | -    |
| 강원 | -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  | -    | -    |
| 제주 | 1          | 1    | -    | 1          | 1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3 | 9  | 4     | -     | 3     | -     | 10 |
| 2022 | 7  | 2     | -     | -     | 1     | 9  |
| 2021 | 7  | 1     | 1     | -     | -     | 7  |

# 6.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 정기준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년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        |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             |                  |                           |       |
|----|--------|-------------------------|-------------|-----------|-------------|------------------|---------------------------|-------|
| 지역 | 2023년말 | 연간 평균                   | 연간 평균 매출액   |           | 명균<br>상한)   | 연간 평균<br>매출액(하한) |                           | 비고    |
|    | 가맹점수   | 연간 평균<br>매출액            | 면적<br>3.3㎡당 | 상한        | 면적<br>3.3㎡당 | 하한               | 면적<br>3.3m <sup>2</sup> 당 | •     |
| 전체 | 10     | 447,099                 | 11,164      | 1,027,224 | 27,294      | 90,909           | 1,818                     | 7곳 산정 |
| 서울 | 4      | 해당없음                    | -           | -         | -           | -                | -                         | 5곳 미만 |
| 부산 | 1      | 해당없음                    | -           | -         | -           | -                | -                         | 5곳 미만 |
| 대구 |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1           | -         | -           | -                | -                         | -     |
| 광주 | -      | 1                       | 1           | -         | -           | -                | -                         | -     |
| 대전 | -      | 1                       | 1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경기 | 5      | 234,428                 | 7,086       | 246,015   | 9,015       | 222,451          | 5,561                     | 3곳 산정 |
| 강원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1           | -         | -           | -                | -                         | -     |
| 경북 | -      | -                       | 1           | -         | -           | -                | -                         | -     |
| 경남 | -      | 1                       | 1           | -         | -           | -                | -                         | -     |
| 제주 | -      | -                       | -           | _         | -           | _                | -                         |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 당사는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 8.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년도 | 10         | 776일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의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직전년도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수단 | 기간      | 지출비용(단 | <u>·</u> 위: 천원, 부기 | ·세 미포함) |
|-------|----|---------|--------|--------------------|---------|
| 丁正    | 구딘 | 기인      | 합계     | 가맹본부               | 가맹점     |
| 합계    | -  | 2023 연중 | -      | -                  | -       |
| 광고/판촉 | -  | 2023 연중 | -      | -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상호 | 담당 지점 또는 부서 | 주소       | 전화번호      |
|---------|-------------|----------|-----------|
| 하나은행    | 인터넷예치서비스    | 인터넷예치서비스 | 1588-1111 |

#### <u>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u>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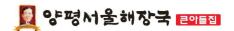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보증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 예치하지 않음  |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8,800 |                  |                       |                        |                               |
| 가맹비 | 5,500 | 계약 체결과<br>동시에 예치 | 영업 개시 이전까지<br>계약 해지   | 가맹점 모집을 위해<br>소요된 실제비용 | 반환시 당사에서<br>정한 기준의<br>위약금을 공제 |
| 교육비 | 3,300 | 계약 체결과<br>동시에 예치 | 교육 시작 1일<br>이전에 계약 해지 |                        | 교육이 시작되면<br>반환되지 않음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
| 총계      | 5,000 |                 |                   |    |
| 계약이행보증금 | 5,000 | 계약체결과<br>동시에 예치 | 금전지급의무 위반, 손해배상 등 |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
| 합계      | 13,800             |
| 가맹비     | 5,500              |
| 교육비     | 3,300              |
| 계약이행보증금 | 5,000(부가세 없음)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br>99㎡(30평기준) | 면적<br>3.3㎡당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 필수설비<br>(장비 및 집기) | 시공업체<br>또는<br>가맹본부<br>(미정) | 30,800           | 1,026          |       |      | 매장상황에 따라<br>변경                |
| 익스테리어<br>(간판/사인)  | 시공업체<br>(미정)               | 6,600            | 220            | 계약체결과 | 발주 전 | 매장상황에 따라<br>변경                |
| 인테리어<br>(점포 내장공사) | 시공업체<br>(미정)               | 42,900           | 1,430          | 동시    | 계약취소 | 3.3m² 늘어날<br>때마다<br>1,430추가부담 |
| 최초 공급상품 비용        | 가맹본부                       | 8,800            | 293            |       |      | 매장상황에 따라<br>변경                |
| 총계                |                            | 89,100           | 2,969          |       |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 환경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 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 기준으로 22만원(부가세포함)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
| 가맹희망자 |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br>※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 늦어<br>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없습니다. |

- ► 점포선정에 대한 상권분석 및 입지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가맹점입 지를 선정하고 판단하는 최종 주체 및 책임자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입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기본적인 매뉴얼 숙지 가능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br>만19세 이상일 것 |
| 종업원    | 기본적인 매뉴얼 숙지 가능자 | 만18세 이상일 것(미성년자 제외)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8) 당사는 가맹금을 분납할 수 없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 9. 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비고 |
|------------|----------|-----------------|----|
| 상표사용료(로열티) | 가맹본부     | 33만원            |    |
| 광고 분담금     | 가맹본부     | 당사 분담 비율에 따라 분담 |    |
| 판촉분담금      | 가맹본부     | 행사별로 분담 등       |    |
| 교육훈련비      | 가맹본부     | 교육실비            |    |
| POS 사용료    | 공급업체(미정) | 별도 계약           |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연20%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2)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맹점 운영을 점검하고 가맹 계약서 및 영업규정을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가맹점의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 자재관리, 고객관리, 메뉴관리, 재고관리 등의 운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가맹본 부에 별도로 지급할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비손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br>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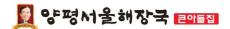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명칭 | 관계 |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br>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 경제적 이익의<br>내용 | 비고 |
|----|----|--------------------------------|---------------|----|
| -  | -  | 해당없음                           | -             | -  |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상품 • 용역 | 거래상대방 | 대가 지불 | 경제적 이익의 내용 | 금액 | 비고 |
|---------|-------|-------|------------|----|----|
| -       | -     | -     | 해당없음       | -  | -  |

2) 당사가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관계 | 상품 • 용역 | 거래상대방 | 대가 지불 | 경제적 이익의 내용 | 금액 | 비고 |
|----|---------|-------|-------|------------|----|----|
| -  | -       | -     | 해당없음  | -          | -  | -  |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 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양평해장국    |              |                 |    |
| 내장탕      |              |                 |    |
| 해내탕      |              |                 |    |
| 선지해장국    |              |                 |    |
| 김치해장국    |              |                 |    |
| 야채해장국    |              | 1회 위반: 구두 경고    |    |
| 돌솥비빔밥    |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 2회 위반: 2회 이상    |    |
| 전주비빔밥    |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서면 시정요구         |    |
| 술국 (중)   |              |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
| 술국 (대)   |              |                 |    |
| 양볶음      |              |                 |    |
| 내장수육     |              |                 |    |
| 곱창(모둠)전골 |              |                 |    |
| 불고기전골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공급품을 고객 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명      | 권장판매가격 | 비고        |
|----------|--------|-----------|
| 양평해장국    | 11,000 |           |
| 내장탕      | 13,000 |           |
| 해내탕      | 13,000 |           |
| 선지해장국    | 9,000  |           |
| 김치해장국    | 9,000  |           |
| 야채해장국    | 9,000  |           |
| 돌솥비빔밥    | 10,000 | 버트티 스 이 이 |
| 전주비빔밥    | 10,000 | 변동될 수 있음  |
| 술국 (중)   | 35,000 |           |
| 술국 (대)   | 50,000 |           |
| 양볶음      | 40,000 |           |
| 내장수육     | 40,000 |           |
| 곱창(모둠)전골 | 50,000 |           |
| 불고기전골    | 40,000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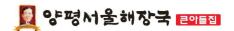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중을만 입중 함기<br>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해장국을 주메뉴로 하는 업종 |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 -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
| 서울특별시·<br>광역시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                                    |                               |
| 기타 지역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2km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br>(지도별지를 원칙으로 함) |
| 특수상권          | (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br>호텔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br>인정 |                               |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br>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br>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br>변동되는 경우<br>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br>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br>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br>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br>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br>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br>동의가 있는 경우 15일<br>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 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 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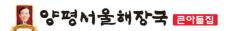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영업표지 | 취급품목 | 가맹점과의 구분 |
|-------|------|------|----------|
| 일반소매점 | -    | -    | -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 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유통업체명   | 주소                        | 취급품목                             | 가맹점과<br>의 구분 |
|-------|---------|---------------------------|----------------------------------|--------------|
|       | 와디즈     | www.wadiz.kr              |                                  |              |
|       | 네이버스토아팜 | sell.smartstore.naver.com |                                  |              |
| 온라인   | 펀샵      | www.funshop.co.kr         |                                  |              |
|       | 원스토어    | www.onestore.co.kr        |                                  |              |
|       | 픽앤유니크   | www.picnique.co.kr        |                                  | 완제품<br>판매    |
|       | CJ MALL | display.cjmall.com        |                                  |              |
| 종합몰   | H MALL  | www.hyundaihmall.com      | 양평해장국,<br>양평서울 장터국밥,<br>양평서울 닭개장 |              |
|       | GS MALL | www.gsshop.com            |                                  |              |
|       | 신세계몰    | shinsegaemall.ssg.com     |                                  |              |
|       | 롯데닷컴    | www.lotte.com             |                                  | 판매           |
|       | 농수산몰    | www.nsmall.com            |                                  |              |
| O프미케  | 롯데아이몰   | www.lotteimall.com        |                                  |              |
| 오픈마켓  | 옥션      | www.auction.co.kr         |                                  |              |
|       | 지마켓     | www.gmarket.com           |                                  |              |
|       | 11번가    | www.11st.co.kr            |                                  |              |
| 소셜커머스 | 인터파크    | www.interpark.com         |                                  |              |
|       | 쿠팡      | www.coupang.com           |                                  |              |



| 티몬  | www.ticketmonster.co.kr |
|-----|-------------------------|
| 위메프 | www.wemakeprice.com     |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연도   | 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 |         | 온라인 판매  | 내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 2023 | 67                     | 0       | 0       | 33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 71           | 29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 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 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br>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                     |
| 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                     |
| 예→4), 아니오→3)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 5 400 5 00          |
| 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                     |
| 하였습니까?                                    | ①+15일 이내            |
| 예→B, 아니오→A                                |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                     |
|   |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                     |
| 계약조건입니까?                                  | -                   |
| 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 5 400 5 00          |
| 예→B, 아니오→®                                | D-180 ~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 5 60 OL OLT         |
| 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                     |
|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
|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         |
|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         |
|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 제36조 1항 |
|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각호      |
| ○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         |
| 지키지 않은 경우                                    |         |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         |
|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         |
| 제외합니다.)                                      |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신규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          | 19조 6항  |
| ○ 가맹점사업자가 3회 이상 원 . 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         |
| 경우   |         |
| ○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
|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   |         |
| 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
|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29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7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         |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
|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구입강제품목을 지정된 사업자로 구   |         |
| 입하지 않은 경우                                      |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   |         |
| 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
|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br>할 수 없게 된 경우  | 37조 2항<br>각호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7±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 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기간을 합산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 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br>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br>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br>동의 여부 회신<br>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br>발생 |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br>가맹점 운영 기준준수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br>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br>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br>결(7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 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기타 의무사항          |
|------|-----------|------------------------------|----------|------------------|
| 상속   | 상속인 사후통지시 | 모든 권리의무                      | 양도절차에 준함 | 교육수료 및 교육비<br>지급 |
| 대리행사 | 본부 승인시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br>지정한 범위 내의<br>권리의무 |          |                  |
| 업무위탁 | 본부 승인시 가능 | -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
|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br>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br>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문의<br>(031-736-0055)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1일 24시간 | 365일 연중 무휴 영업 | 문의<br>(031-736-005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3명 이상   | 직접 근무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점주의 부재시<br>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빈도 및 시기 | 비고 |
|----------|--|---------|----|
| 매장 청결    |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br>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    |
| 친절도      |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br>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 필요시 실시  |    |
| 품질 관리    |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br>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비손과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광고 성격    |                      | 부담비율                  |   | ᆸᄗᄭᇸ   | ш¬  |
|-------------|----------------------|-----------------------|---|--|---|
| 丁世          | 27 24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분담 절차  | 비고  |
|             | 상품광고                 | 광고비의<br>50%           | 광고비 50%<br>중 가맹점<br>총매출액<br>비율 따라<br>산정 |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 대중매체 광고<br>명절, Day<br>이벤트 행사<br>(전국 행사)                       |
| 광고<br>전체 행사 | 상품광고+<br>가맹점모<br>집광고 | 광고비의<br>75%           | 광고비 25%<br>중 가맹점<br>총매출액<br>비율 따라<br>산정 | 광고 계획 공고 → 기공임의<br>광고참여 여부 결정 →<br>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
|             | 가맹점<br>모집광고          | 전액 부담                 | 없음                                      |  |   |
| 판촉행사        | 할인행사                 | 할인금액<br>(소비자가)<br>50% | 할인금액<br>(소비자가)<br>50%                   |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br>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br>→ 행사 시행 → 종료 후<br>최종분담금 확정 | 판촉행사 동의<br>절차를 거친 후<br>전체 가맹점<br>사업자의 70%<br>이상의 동의시<br>전체 적용 |
|             | 증정행사                 | 증정상품<br>출하가 50%       | 증정상품<br>출하가 50%                         | n  | 11  |
|             | 팜플렛 등                | 판촉물                   | 판촉물                                     | п  | 11  |

|                       | 제작   | 제작비용<br>50%                  | 제작비용<br>50%                  |   |                   |
|-----------------------|------|------------------------------|------------------------------|---|-------------------|
| 할인카드.멤<br>버십<br>제휴서비스 | 제휴행사 | 서비스로<br>인한 월<br>할인금액의<br>50% | 서비스로<br>인한 월<br>할인금액의<br>50% |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가<br>맹본부) 자료제출일로부터 10일 이<br>내 부담액 송금 | 할인서비스 등의<br>종료시까지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자점매입한 금액 ×3 의금액 또는 금 일천만 원(₩ 10,000,000원) 중 큰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자점매입 금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금 일천만 원(₩ 1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

| 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br>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
| 합계                |   | 47일 내외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br>-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br>-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br>- 가맹희망자 상담 | D-46 ~ 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br>실시 | - 입지선정<br>-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34 ~ 31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30          |
| 가맹금 예치            | - OO기관에 가맹금 예치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27 ~ 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24 ~ 5(20일)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7 ~ 4(3일)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 청을 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점포환경개선<br>사유 | 가맹본부 부담<br>비용항목 | 가맹본부 부담<br>비용비율 | 지급절차            | 비용부담<br>제외사유 |
|--------------|-----------------|-----------------|-----------------|--------------|
| ㅇ점포의 시설,     | ㅇ간판교체 비         | ㅇ점포의 확장 또는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 ㅇ점포환경개       |
| 장비, 인테리      | 용               | 이전을 수반하지 않      |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    | 선일로부터        |
| 어 등의 노       | ㅇ인테리어 공         | 는 점포환경개선 :      | 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 3년 이내에       |
| 후화가 객관       | 사비용(장비·집        | 20%             | 는 서류 첨부) → 90일  | 가맹본부의        |
| 적으로 인정       | 기의 교체비용         | ㅇ점포의 확장 또는      |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     | 책임없는 사       |
| 되는 경우        | 을 제외한 실         | 이전을 수반하는 점      | 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 유로 계약이       |
| ㅇ위생이나 안      | 내건축공사에          | 포환경개선 : 40%     | 지급              | 종료(계약의       |
| 전의 결함으       | 소요되는 일체         |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 해지·영업양       |
| 로 인하여        | 의 비용. 단,        |                 |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 도 포함)되       |
| 가 맹 사 업 의    | 가맹사업의 통         |                 |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   | 는 경우 가       |
| 통일성을 유       | 일성과 무관하         |                 | 에서 분할지급 가능)     | 맹본부 부담       |
| 지하기 어렵       | 게 가맹점사업         |                 |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    | 액 중 잔여       |
| 거나 정상적       | 자가 추가 공         |                 | 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    | 기간에 비례       |
| 인 영업에        | 사를 실시함에         |                 | 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 . – . – .    |
| 현저한 지장       | 따라 소요되는         |                 |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 은 지급하지       |
| 을 주는 경       | 비용은 제외)         |                 |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    | 아니하거나        |
| 우            |                 |                 | 부터 90일 이내에 가맹   | 이미 지급한       |
|              |                 |                 | 본부 부담액을 지급      | 경우에는 환       |
|              |                 |                 | <분할지급 시 절차>     | 수 가능         |
|              |                 |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              |
|              |                 |                 |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    |              |
|              |                 |                 | 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              |
|              |                 |                 | 는 서류 첨부) → 3차에  |              |
|              |                 |                 |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              |
|              |                 |                 | 분할 지급           |              |
|              |                 |                 | (1차 : 청구일로부터 90 |              |

|           |               |               | 일 이내,            |    |
|-----------|---------------|---------------|------------------|----|
|           |               |               | 총 부담액의 30%, 2차 : |    |
|           |               |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    |
|           |               |               | 이내, 총 부담액의 30%,  |    |
|           |               |               |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    |
|           |               |               |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    |
|           | 71 -1 11111 6 |               | 40%)             |    |
| ㅇ점포의 시설,  | ㅇ간판교체비용       | ㅇ가맹점사업자의 투    |                  |    |
| 장비, 인테리   | ㅇ인테리어 공       | 자금액(임차료 등),   |                  |    |
| 어 등의 노    | 사비용(장비·집      | 월평균 매출액 등     |                  |    |
| 후화가 객관    | 기의 교체비용       | 을 고려하여        |                  |    |
| 적으로 인정    | 을 제외한 실       | -점포의 확장 또는 이  |                  |    |
| 되는 경우     | 내건축공사에        | 전을 수반하지 않는    |                  |    |
| ㅇ위생이나 안   | 소요되는 일체       | 점포환경개선 : 5    |                  |    |
| 전의 결함으    | 의 비용. 단,      | 0% ~ 100%     |                  |    |
| 로 인하여     | 가맹사업의 통       | -점포의 확장 또는 이  | II .             | 11 |
| 가 맹 사 업 의 | 일성과 무관하       | 전을 수반하는 점포    |                  |    |
| 통일성을 유    | 게 가맹점사업       | 환경개선 : 50~80% |                  |    |
| 지하기 어렵    | 자가 추가 공       | -단, 집기·장비교체비  |                  |    |
| 거나 정상적    | 사를 실시함에       | 용은 20% 부담     |                  |    |
| 인 영업에     | 따라 소요되는       |               |                  |    |
| 현저한 지장    | 비용은 제외)       |               |                  |    |
| 을 주는 경    | ㅇ집기·장비교체      |               |                  |    |
| 우         | 비용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비고                   |
|--------------|--|---|------------|----------------------|
| 가맹본부<br>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br>판매촉진, 고객관리,<br>위생관리, 교육훈련,<br>회계 등 가맹점 운영<br>전반에 대한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br>(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br>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br>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br>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 | 가맹본부<br>부담 | 문의<br>(031-736-0057) |

|                | 경영지도   | 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br>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br>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br>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br>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br>설명  |   |  |
|----------------|--|---|---|--|
| 가맹점사업자<br>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br>판매촉진, 고객관리,<br>위생관리, 교육훈련,<br>회계 등 가맹점 운영<br>전반에 대한<br>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br>부담<br>(가맹금에<br>포함된<br>통상의<br>경영지도<br>비용을<br>초과한<br>부분에 한함)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정책 | 주요 내용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신규 교육 | 회사 소개<br>음식 가공<br>POS 사용, 입금 방법 등 | 실습교육 | 가맹계약 체결<br>후 30일 이내 | 필수 교육       |
| 보수 교육 | 신메뉴 가공<br>종업원 관리 실무 등             | 실습교육 | 통지 후 30일<br>이내      | 필수적으로<br>이수 |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비고         |
|-------|--------|--------------------|------------|
| 신규 교육 | 1개월    | 3,300              | 최초 계약 시 이수 |
| 보수 교육 | 필요시 실시 | 교육실비               |            |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9조 6항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9조 7항에 따라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번 | 지역 | 직영점명 | 주소 |
|----|----|------|----|
| -  | -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산정기준 |
|----------------------|------|
| -                    | -    |

별지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별지 2 구입강제품목 및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별지 3 가맹금예치신청서

별지 4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별지 5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자문 확인서

## [별지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2] 구입강제품목 및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1. 거래상대방 강제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 거래상대방 권장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별지 3]

#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
|-------|----------|-----|------|------|----|
|       | 상호(가맹점명) |     |      |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      |      |    |
|       | 주소(사무소)  |     |      | 전화번호 |    |
|       | 상호(영업표지) |     |      |      |    |
| 가맹본부  | 성명(대표자)  |     |      |      |    |
|       | 주소(사무소)  |     |      | 전화번호 |    |
| 예치가맹금 | ₩        | (금  | 원 정) |      |    |
| 신청인의  |          |     |      |      | _  |
| 계좌    |          |     |      |      |    |
| 가맹본부의 |          |     |      |      |    |
| 계좌    |          |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합니다.
-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4]

##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 No. | 상 호 | 대표자명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별지5]

정보공개서 등 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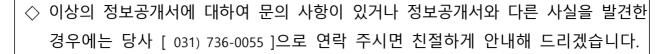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자문 확인서

| ※ 가맹계약체결 14일전에 가맹희<br>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br>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인근<br>(자필: | 업거래       | <br>의 공정      | <br>!화어 |              | 동법 시행령 제6조의   |
|---|-----------|---------------|---------|--------------|---------------|
| 정보공개서가 최종 등록날:  | 녀         | 월             | 일       |              | )             |
|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 _         | _             |         | 가맹희망자 _      | (인 또는 서명)     |
|   |           |               |         |              |               |
| ✓ 정보공개서 자문 ───  |           |               |         |              |               |
| ※ 자문을 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 7일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         |              |               |
| 본인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기  | ·<br>마맹거리 | 배사인 (         |         | )으로부터 자      | ·문을 받았습니다.    |
| 자문을 받은 날: _   | 년         | 월 _           |         | 실 가맹희망자      | (인 또는 서명)     |
| 가맹계약서 제공  |           |               |         |              |               |
| **가맹계약체결 1일전에 가맹희망  | 자에게 :     | 가맹계익          | ᅣ서를     | 제공하여야 가맹계약을  | 물 체결할 수 있음.   |
|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br>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의 공정          | 화어      | 관한 법률 제11조 기 | 데1항에 따라 가맹계약  |
|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날: _  | 년         | 월             |         | · 가맹희망자      | (인 또는 서명)     |
|   |           |               |         |              |               |
| 비밀유지 확약   |           |               |         |              |               |
|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 변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 고, 무딘     | <u> </u> 으로 - | 유출      | 또는 제3자에게 누설  | 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 |

가맹희망자 \_\_\_\_(인 또는 서명)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 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http://www.양평해장국.com ] 또는 가맹사업정보제 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